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례적용대상 확대 등 사업개편 촉진 기반 강화〉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66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규모 합병 등 특례 적용 범위 확대	2
2.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재편시 자금지원 허용	8
3.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12
※ 참고 자료	14
참고1. 현행법 제16조 특례 대상 조문	14
참고2. 법무부 협의대상 특례	15
참고3.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대상 특례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2.
3. 회부연월일 : 2025. 10.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규모 합병 등 특례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법」상 특례 적용시 소규모 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등에 대한 ‘소규모’ 인정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완화하고(안 제16조제1항),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제4조제1항제1호나목)인 경우에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송부 및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더라도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6조의2).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u>100분의 20</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① ----- ----- ----- ----- ----- ----- <u>100분의 30</u> ----- -----.

현행	개정안
경우”로 한다. ② (생략)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1. 2. (생략)¹⁾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2호----- ----- -----. ----- ----- -----. 1. 2. (현행과 같음)

우선, 현행법 제16조제1항에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²⁾은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간 소규모 주식교환, 소규모 합병(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준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2) 「상법」 조문은 참고자료1 참조

용)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임. 즉, 「상법」은 합병 등의 대가로 자기 주식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존속회사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나, 10% 이내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사업재편을 위한 합병 등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가 아닌 ‘20% 이하’인 경우에 대해 「상법」상 특례를 부여하도록 ‘소규모’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조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그 기준을 ‘30% 이하’로 추가확대하여 사업재편을 위한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자 함.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회사가 소규모 합병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과잉공급 분야의 산업개편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무부는 소규모합병 제도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 등 주주보호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데, 개정안에 따라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 제4조는 동 법률(이하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를 공급안정 사업재편(제1호), 미래 사업재편(제2호) 및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제3호),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제4장제1절(「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및 제2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표 2] 「기업활력법」 적용범위 유형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u>공급안정 사업재편</u> 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u>미래 사업재편</u> 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u>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u>
4. 삭제
5. 삭제

다만, 현행법 제26조의2는 사업재편의 구체적인 유형 중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제4조제1항제1호나목)과 미래 사업재편(제4조제1항제2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에 대해 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의 특례(「상법」 등에 대한 특례, 참고자료2 참조)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로 사업재편계획을 송부·협의하고, ②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참고자료3 참조)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사업재편계획을 송부·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이나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유형은 이미 위기가 발생한 경우로서 특례를 부여하여 산업구조를 조속하게 개편하고 해당 산업 분야나 지역의 경기침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지만,

생산·비축·수입량 확대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등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사업재편의 경우에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및 협의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의 경우에도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규제 등으로 단기간 내에 공급망 차질에 대응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법무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

고자 함.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액 주주 및 채권자 보호 장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재편시 자금지원 허용

개정안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합병·분할 등 신설기업 포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자금지원) ①·② (생략)	제28조(자금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 ----- .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용자·보증시 금리·요율 등을 우대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자산매각³⁾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4] 현행법상 자금지원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용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장의 신설·이전·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⁴⁾으로 지정될 정

3) S&LB 방식으로 캠프에서 유동성 공급, '23년 500억 규모

4)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설명 요약(<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69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집단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소속 계열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및 그 자·손자·증손회사)을 지정하고,

-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유·출자 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 및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있음

도로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법률상 특례는 부여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왔음.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석유화학산업 분야는 이미 대출규모가 상당하다는 점⁵⁾ 등을 고려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자금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침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허용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무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 기준 및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개정안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사업재편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동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

5) “구조조정 미루는 석화업계에…정부, 채권단 통해 33조 돈줄 압박”, 2025. 9. 24.,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28419?utm_

법안소위에 회부⁶⁾되어 있거나 회부될 예정⁷⁾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3033호, 2025.09.16.,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3686호, 2025.10.23.,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3.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전기요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8)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재편(제2조제2호가목)인 아니라 신기술 도입, 신산업 진출 등 사업혁신을 추진하려는 사업재편(제2조제2호나목)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혁신을 위한 사업재편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특히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산업은 전력수요가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혁신시 전기요금 비용이 클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과 같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획예산처⁹⁾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시 다른 산업 부문과의 형평성 및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9) (의견제출시)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상법」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 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

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할 것
2.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피출자기업”이라 한다)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3.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

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